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130 취득세 등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취득세 85,920,240원, 농어촌특별세 70,587,213원, 지방교육세 4,909,719원 합계 161,417,1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3. 1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C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D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6. 2.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39,088,249,5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4,470,980원, 농어촌특별세 78,176,490원, 지방교육세 62,541,190원 합계 1,235,188,66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6.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1. 3. 15. 피고에게 '①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2,700,000,000원, 신탁보수 지연이자 6,705,680원, 회사계정차이자 361,874,571원 합계 3,068,580,251원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서민주택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85,920,240원, 농어촌특별세 70,587,213원, 지방교육세 4,909,719원 합계 161,417,17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서를 관서에 접수한 2016. 3. 8.이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위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30.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바,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기한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접수를 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예외적 규정일 뿐이고, 만일 그때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정상적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변칙적으로 등기를 연기하는 경우에 비해 경정청구기한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 접수를 하는 날이 아니라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한 신탁보수 등 합계 3,068,580,251원은 신탁재산의 원활한 관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와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원가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2016. 3. 8.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3. 15.에 경정청구를 하여 부적법한바,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후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는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2조는 '지방교육세 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와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등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이라고 해석됨은 문언상 명확하며, 달리 위와 같은 해석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2016. 3. 7.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합계 1,235,188,66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6.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2018. 3. 8.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인 2021. 3. 15.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1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끝.